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가이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목 차

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04

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06

1.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이란
2.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수행원칙
3.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
4.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적용
   - 가. 복지사업 기획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 나. 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 다. 복지사업 평가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Ⅲ.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10

1. 아동보호정책이란?
2. 아동보호정책 대상
3. 아동보호정책 핵심개념
4. 아동보호정책 행동강령
5. 아동보호정책의 이행
   - 가. 복지사업 기획
   - 나. 복지사업 수행
   - 다. 복지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Ⅳ. 2022년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13

1.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개요
   - 가. 정의
   - 나. 목적
   - 다. 공모사업의 방향
   - 라. 공모사업 분야
   - 마. 공모사업 용어정의
   - 바. 수행절차

2. 공모사업 신청
가. 신청대상
나. 신청불가
다. 신청방법 및 시기
라. 제출서류
마.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 기준
바. 신청시 유의사항
3. 예산편성
가. 예산작성 방법
나.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4. 공모사업 심사
가. 심사기준
나. 심사과정
5. 공모사업 지원원칙

Ⅴ. 관련 서식 – 공통 26
[서식1]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2] 신청기관 현황
[서식3] 사업계획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서식5]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Ⅵ. 참고자료 41
[참고자료1]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참고자료2] 유엔아동권리협약
[참고자료3] 아동권리기반 적용 세부기준 점검 – 프로그램 부문
[참고자료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참고자료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사업기관 리스트

I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입니다.

미 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핵심가치

- ▶ 아동중심 - 우리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래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 ▶ 전문성- 우리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아동복지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 투명성 - 우리는 회계의 정직성과 사업의 책임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 ▶ 변화도전 -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도전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비 전

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이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아동권리기반'으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이행자[1]가 의무를 다하도록 촉진하는 모든 활동

2.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수행원칙

재단의 모든 복지사업은 아동권리실현이 목적이며, 사업수행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업에서 아동을 권리주체자[2]로 존중한다.
2. 사업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둔다.
4. 사업은 증거에 기반하며, 그 증거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한다.
5. 아동은 늘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개별아동의 특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한다.
6.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며, 경청한 의견에 대해 반영하고 결정된 사항을 피드백한다.
7. 아동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8. 사업이 수행되는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9. 사업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10. 가장 취약한 아동을 먼저 고려하고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한다.

1) 의무이행자: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존중·보호·충족시켜주어야 하며, 아동권리실현에 있어 의무이행자는 부모, 보호자, 사회복지실천가, 교사, 지자체, 국가 등이 있다.
2) 권리주체자: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주어진 권리주체자이다. 권리주체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3.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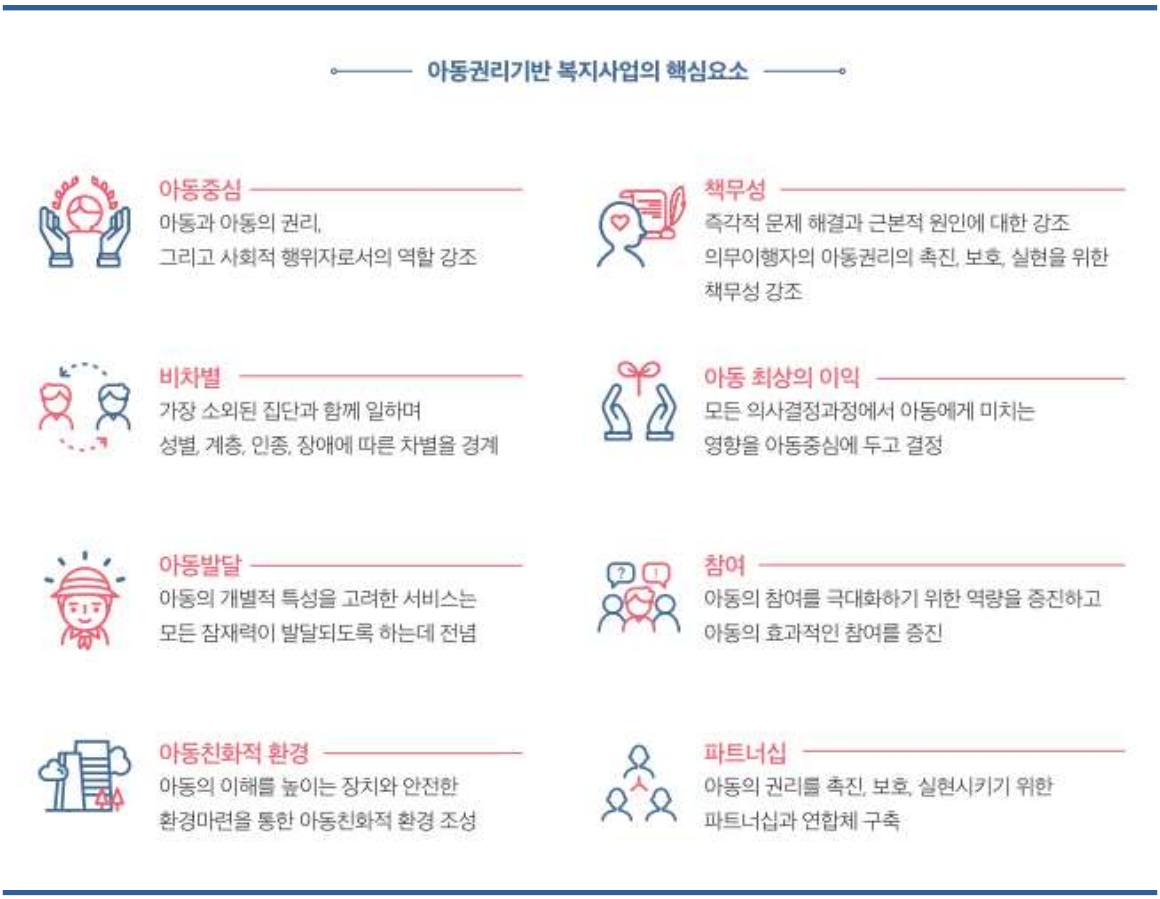

4.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적용

가. 복지사업 기획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는 사업 기획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와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의무이행자이고 의무이행자의 책무는 무엇이며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인과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동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역량강화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가장 소외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한 아동이 배제 또는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고, 배제되거나 소외된 집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 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 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진전사항을 살펴보고 아동권리기반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은 참여자 설문조사 및 피드백, 동료평가,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 또한 아동 권리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실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숨겨진 차별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권리기반접근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모니터링 후 각각의 결과에서 가리키고 있는 개선점을 함께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복지사업 평가에서의 아동권리기반 접근

- 복지사업의 평가란 사업수행을 통해 얻게 된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참여자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면 가장 극대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 아동권리기반에서의 평가는 사업의 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단계에서 원칙과 핵심요소가 잘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평가 합니다. 결과와 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은 수행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평가에서 얻는 교훈에 따라 향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앞서 제시된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복지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참고자료3(60p)과 같습니다.

Ⅲ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 아동보호정책이란?

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미션에 기반하여 아동, 가족,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포함한 11개국의 아동 중심 NGO들의 연합체인 국제어린이재단 연맹(이하, '연맹')은 2016년 11월 'Keeping Children Safe'에 가입하고 '아동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연맹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 정책을 도입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한다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2. 아동보호정책 대상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재단 이사, 임직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사회 및 임직원(재단 이사 및 임직원을 제외한 아래의 대상자는 **'관련자'**라 함.)	
• 인턴(근로장학생 등) 및 실습생	• 후원자(개인, 기업, 단체 등)
• 사회복무요원	• 자문단 및 자문 위원
• 자원봉사자	• 재단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협력기관 및 소속직원	• 언론인 및 미디어 관련자
• 홍보대사(나눔대사 등) 및 후원회	• 기타 관련자

3. 아동보호정책 핵심개념

아동보호 (Child Safeguarding)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및 이의 이행
아동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협력기관 (공모사업 수행기관)	아동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재단과 함께 일하며, 아동이 포함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기관의 직원
아동폭력 (위험)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거나, 체벌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포함

4. 아동보호정책 행동강령

○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5. 아동보호정책의 이행

재단은 직원 채용, 교육 및 훈련,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아동정보보호, 아동과의 교류활동,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본 정책을 준수한다.

가. 복지사업 기획

· 사업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든 사업은 사업의 중점 또는 대상과 관계없이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 사업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이 아동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시키도록 해당 사업 및 세부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특히 학대나 착취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한 사업에는 즉각적 개입 및 근본 원인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복지사업 수행

· 사업 수행의 과정과 결과가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자에게 본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자의 권리와 아동권리 보호의 의무에 대해 반드시 사전 고지한다.
· 사업 담당자는 아동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아동보호의 원칙을 반드시 모니터링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다. 복지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시 반드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본 정책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정책위반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 정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아동보호정책 전체문서는 [참고자료4]- 62p 참고

Ⅳ

2022년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개요

가. 정 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연대 및 협력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아동권리기반의 권역 중심 Meta NPO 공모 사업 입니다.

재단의 복지사업 방향 및 추구가치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이행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나. 목 적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확산을 통해 아동의 역량 강화와 아동권리실현 기반 마련
- 다양한 아동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문제 해결과 아동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권역 맞춤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너지 창출로 Meta NPO 파트너십 강화

다. 공모사업의 방향

-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이행자의 의무를 촉진하며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아동권리기반사업
-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차별 없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 아동 권리 증진과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성을 가미한 사업
- 아동의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재단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대 및 협력하는 사업
-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
- 기관의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재단의 복지사업 방향과 추구 가치를 함께 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

라. 공모사업 분야

공 모 분 야	공 모 주 제	내 용
「아동 성장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자립역량강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경제적 자립역량강화: 자립탐색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 심리정서적 자립역량강화: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정서지원 관련 자조모임 등 - 자립지지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첫살림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위탁부모 교육, 친가정만남 프로그램 등 -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옹호활동 (세미나, 토로회, 연구조사, 정책제안 등)
	교육기회보장	**저소득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 기초교육 접근성 개선 및 성취지원: 기초교과목(국,영,수,사,과) 학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재능탐색 접근성 개선: 기초교과목을 제외한 예체능, 기타 학업(코딩 등)을 위한 학습 지원, 재능탐색을 위한 일회성/다회성 체험 프로그램 등 - 교육 관련 옹호활동 (세미나, 토론회, 연구조사, 정책제안 등)
	주거환경개선	**주거빈곤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아동 가정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 주거 관련 옹호 활동 (세미나, 토로회, 연구조사, 정책제안 등)
	건강한 삶 보장	**저소득(일반)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놀권리 보장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등 - 신체적·정신건강·놀권리 관련 옹호활동(세미나, 토론회, 연구조사, 정책제안 등)
범분야 이슈	기후 위기 대응	기후변화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권역 내 이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역 사회 이슈	지역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
	기타 이슈	권역에서 선정한 그 외 기타 주제의 사업

마. 공모사업 용어정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　　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정한 바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재단의 옹호 정의**

아동권리옹호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일련의 활동
아동의 권리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가진 권리
아동권리 보호	권리침해 요소 제거 및 구제, 추가 침해상황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
존　　중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주체자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실　　현	성인과 국가가 의무이행자로서 아동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전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인식개선	아동들은 자신이 권리주체자임을 깨닫고 국가와 부모, 성인들은 아동권리 의무이행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환경개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system)을 구축하는 것
지 속 적	일회성이거나 단발적 활동이 아닌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
조 직 적	아동의 완전한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일련의 활동	분절되지 않고 어린이재단과 공모사업 수행기관이 동일한 목표로 상호보완하며 하나로 이어지는 옹호활동을 진행하는 것

- **아동보호(Child Safeguarding):**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및 이의 이행
- **공고기관:**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중 공모사업 공고를 실시하는 전국 지역본부 18개소(본부 제외), 아동옹호센터(일부)

기관유형	기 관 명
지역본부 (18개소)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세종지역본부
아동 옹호센터 (7개소)	서울아동옹호센터, 부산아동옹호센터, 경기아동옹호센터,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전남아동옹호센터, 경북아동옹호센터, 경남아동옹호센터

- **권 역 별:** 해당 공고 기관이 위치한 지역
- **신청기관:** 2022년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신청접수를 완료한 기관
- **선정기관:** 2022년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관
- **협력기관**: 공모사업 선정기관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단과 함께 일하며,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직원 포함)

바. 수행 절차

공모사업 모집 공고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 공모사업 메뉴 - 권역별 공모사업 모집 공고
- 공고기관: 전국 어린이재단 지역본부(18개) 및 아동옹호센터(일부)

⇩

신청 접수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모사업 메뉴 - 신청 희망하는 권역별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심사절차: 1차 심사 → 1차 심사발표→ 2차심사 → 2차심사 발표 →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수정
- 심사단계

구분	진행방식	심사자	참고
1차 심사	신청 서류 서면심사	공 고 기 관	사업 내용에 따라 심사 단계는 조정될 수 있음
2차 심사	- PT 면접 or 영상면접 or 현장실사 등		
최종 예산조정 및 수정	-		

⇩

최종 발표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 공모사업 메뉴를 통해 선정기관 최종발표

⇩

협약 체결

- 참석대상: 공고기관 대표 + 선정기관 대표

⇩

사업비 배분

- 연간 총 2회차 배분
  (1회차 - 사업 선정 공고 이후 / 2회차 -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 **아동보호정책, 아동권리교육 필수 이수 - 온라인 콘텐츠 활용**
- (기관별) 공모사업 별 주요사항 안내, 공모 주제 관련 교육(상시)

⇩

사업수행

- 선정기관 사업수행
- 프로그램 평가지원단 및 전문가 자문 연중 지원(필요시)

⇩

사업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및 2회차 배분금 신청 → 중간보고서 검토 후 2회차 배분
- 현장 모니터링, 공모사업 기관 간담회 등 진행 가능

⇩

사업 결과보고

- 선정기관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잔액) 반납
- 권역별 성과공유회 (예정)

⇩

전국공모사업 성과공유회

- 공모사업 성과 공유 및 우수 사업기관 시상(예정)

2. 공모사업 신청

가. 신청대상

-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나. 신청불가

- 동일한 사업으로 2020년 ~ 2022년 재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단, 사전에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재단 내 사업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당해 지원을 받았거나 확정된 사업 (선별을 위한 별도심사 필요)
-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재단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 재단의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 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기관(단체)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과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동의가 안된 경우

다. 신청방법 및 시기

<table>
<tr><th>공 모 분 야</th><th>주 제</th><th>신청방법</th><th>신청기간</th></tr>
<tr><td rowspan="4">「아동 성장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td><td>자립역량강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td><td rowspan="8">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공모사업 메뉴를
통해 각
권역별공고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22년 3월중
오픈 예정)</td><td rowspan="8">권역별
별도 공고</td></tr>
<tr><td>교육기회보장</td></tr>
<tr><td>주거환경개선</td></tr>
<tr><td>건강한 삶 보장</td></tr>
<tr><td>범분야이슈</td><td>기후위기대응</td></tr>
<tr><td rowspan="3">권역 내 이슈</td><td>복지사각지대 발굴</td></tr>
<tr><td>지역사회 이슈</td></tr>
<tr><td>기타 이슈</td></tr>
</table>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제출시 유의사항
① 신청공문(기관 직인 포함) 1부 ② 공모사업신청서 1부(양식) ③ 신청기관 현황 1부(양식) ④ 사업계획서 1부(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양식) ⑥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파일 1부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의 서류 제출) ⑦ 시설신고증(*참고) 복사본 파일 1부 ⑧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1부(양식) ※ ①~⑧는 공통서류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별 추가 제출서류 유무 확인**	- 권역별 공고문에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공통 양식에 작성 - 제출서류의 파일명은 '양식명_기관명'의 형태로 입력 예) '사업계획서_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 그 외 제출서류는 모두 PDF파일로 제출 -양식 내에 작성되어있는 작성가이드와 예시는 모두 삭제하여 제출 - 양식별 작성 분량 준수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제출
* 정부에서 신고시설, 기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자체 공문 등)
* 비영리법인일 경우, 시설신고증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통해 비영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마.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 기준

공모사업 지원기간(기준)	2022년 사업기간	신청금액
1년 단위(연 내) (사업에 따라 장기계획으로 연도별 지속지원이 필요할 경우라도, 1년 단위로 재선정)	권역별 별도 공고	신청기관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권역별 별도 공고

- 예산 수립 시 자부담에 대한 의무 비율은 없음 (단, 가산점 부여)
- 총 배분 신청금액의 70% 이상 사업비 책정해야하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30% 이내로 책정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은 필수 사항 아님)

※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단순 물품지원 형태의 사업 및 예산수립 불가함

바.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선택한 사업 분류를 변경할 수 없음
2) 한 기관에서는 1개의 세부 주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3) 컨소시엄 형태도 지원 가능하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은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 (단, 컨소시엄 대표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사업연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배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컨소시엄 대표기관이 단순 사업비 재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4)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배분 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공고기관으로 문의 바람)
5) 온라인 공모사업 신청은 마감일 정시에 자동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함)
6)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등록 완료를 권장함
7) 신청서상의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회수 등의 제재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재단 공모사업 신청 불가함
8)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심사 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는 공고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10) 공통사항을 제외한 세부내용은 각 권역별 공고 참고

3. 예산편성

(출 처: 어린이재단 예산편성지침)

가. 예산작성 방법

1) 전체 지원금(100%) 중 **사업비 비율은 70% 이상, 관리운영비+인건비 비율은 30% 이하**임(비율 규정 준수)
2) 목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로만 구분
3) 세목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편성
(세목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 예산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임)
4)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작성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시)
5)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으며, 계획 대비 집행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

목	설 명	해당항목	참고
인건비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하는 비용	- 사업 담당자 / 보조담당자의 인건비 - 사업 담당자 / 보조담당자의 시간 외 수당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필수 ※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준수 ※ 퇴직적립금의 경우 전담 직원이 해당사업 수행만을 위해 1년 이상 계약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책정	**30% 이하**
관리 운영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등	
사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 실인원수(아동중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식대, 간식비, 교재교구비, 입장료, 사업수행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 자문비, 인쇄비(현수막, 초청장, 유인물, 자료집 등), 기념품 제작 등	**70% 이상**

나.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출처: 어린이재단 예산편성지침)

항목		기 준		사용한도		참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당	
강사비	특별 강사 (전/현직)	•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 대사 •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장 • 특별행정기관장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 총수(회장),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50,000원	170,000원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는 강사비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책정하지 않음. - 강사의 교통비는 필요시 (권역 외 이동) 실비산정하여 지급
	1급 강사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의 박사학위소지 연구원 • 학교법인 대표 및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연구기관의 박사학	280,000원	140,000원	

		각급 학교의 장 • 4급 이상 공무원	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재단이 인정하는자			
	2급 강사	• 대학 강사 등 겸임 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 사회복지 기관, 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종사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재단이 인정하는자	200,000원	100,000원	
	3급 강사	•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전문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자	150,000원	75,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 실습 보조요원		70,000원	45,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33만원 · 6~10인 45만원 · 11인 이상 66만원		- 단체공연의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8만원 · 6~10인 55만원 · 11인 이상 80만원		

※ 강사비 예산 편성시 참고사항

① 기준표는 최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강의시간 기준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 같은 날짜에 동일 대상에게 동일 내용(주제)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지급

③ 강사 교통비
- 필요시 권역(광역시/도 단위) 외 이동은 실비(대중교통 기준) 산정하여 지급 / 출발지: 소속기관(프리랜서의 경우 거주지 기준) - 사용한도(실비), 강사비에 포함해서 세금공제 후 지급
- 대중교통: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수단(택시제외)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급 유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공기관, 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강사비(교통비 포함)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이 외부강의 강연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강사의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 처리

⑤ 강사비, 강사교통비, 원고료, 자문비, 번역료는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2) 여비 및 기타 경비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참고
출장 여비	시내 여비	• 교통비 • 1인 / 1일 기준	5,000원	· 차량 미 소유 기관에 한하며 재단의 사전 동의 필수 · 필수첨부서류: 출장목적이 확인되는 대장 또는 기록
	시외 여비	• 교통비 (KTX일반,고속버스,전세버스 등)	실비지급	· 일비에는 시내버스, 택시 등 현지교통비 및 입장료 등의 일반 잡비 포함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 50% 적용
		• 일비	15,000원	
		• 식비 / 1식 기준	10,000원	
		• 숙박비	50,000원	
자원봉사자 관련 비용	식사비	• 1인 / 1일 기준/점심	10,000원	- 봉사시간 3시간 이상 (자원봉사행사 예외)
		• 1인 / 1일 기준/저녁	20,000원	
	간식비	• 1인 / 1일 기준	5,000원	-
	교통비	시내	지급하지않음	-
		시외	실비지급	· 활동 기관 기준
식사비		• 1인 기준	10,000원	· 간식비는 식대(1식)와 통합사용 가능 · 사업평가회, 감사행사 등의 저녁활동 진

간식비	• 1인 / 1일 기준	5,000원 이내	행시 필요한 경우 석식비 20,000원 편성 가능 · 외부기관과의 회의 진행시 간식비 및 식사비 편성 가능 · 필수첨부서류: 결과보고서, 참여자 명단, 사진
자문비	• 복지사업 자문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회 100,000원 이내	※ 슈퍼비전 기록 필히 첨부 ※ 자문 내용 기본 서식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e-mail 자문(유선포함)	1회 20,000	
번역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가능

☞ **기타경비 예산 편성시 참고사항**

① 출장여비 지급 시

■ 시외출장/식비: 조식은 지급하지 않고, 석식은 사무실 도착시간이 20시 이후인 경우 해당.
단, 숙박의 경우 다음날 아침 식비는 지급.

■ 시외출장/일비:
- 숙식 제공되는 경우 : 출장 시작일과 마치는 날만 100% 지급.
- 숙식 + 교통비 제공되는 경우 : 출장시작일과 마치는 날만 50% 지급.

② 비품/장비 구입 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는 구입 가능. **단, 관리 운영비로 편성**

③ 자원봉사자 관련 비용

■ 자원봉사자 관련 식/간식비 예산 편서 대상자 범위

- 상시관리: 자원봉사자에 한해 책정

4. 공모사업 심사

가. 심사기준

- 사업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구 분	심 사 항 목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책임감, 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사업방향 및 주제와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 준비성	예산 구성의 타당성, 연대 및 협력의 가능성(재단, 지역사회 등), 대응 계획(위드코로나)
아동권리중심	신청사업과 재단 가치와의 부합 정도(아동권리기반), 아동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노력

나. 심사과정

- 사업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단계는 조정될 수 있음

1) 1차 심사 : 접수서류 서면심사 - 신청자격 해당 여부, 필수서류 제출 완료 등 배분 대상 해당 여부 등 심사

2) 2차 심사: 면접 또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현가능성 , 사업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5. 공모사업 지원원칙

가. 지원과 관련한 기타 제반사항은「2022년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가이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재단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관련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기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 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다.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금 지원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참고자료 4)을 위반하였을 경우
  *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동법 제17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재단의 배분지침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재단 배분심의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라.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최종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마. 공모사업 선정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고 기관이 요청하는 협약식,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팀장 및 실무자), 권역 성과공유회 , 전국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재단은 사업수행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음.

V

관련 서식

공 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식1] 공모사업 신청서

※ 파란색 글씨는 예시 및 항목별 설명입니다 제출시에는 삭제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분야 / 주제		범분야 이슈 / 기후위기대응	구 분	□ 신 규 □ 연 속 (년차)
신청기관	기 관 명		대표자명	
	운영법인명 (단체명)		대표자명	
	신청기관 고유번호		주 소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입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담당자 이름		소속팀(직위)	
	담당자 사회복지 현장근무경력	년 개월	현직장 근무경력	년 개월
	담당자 직통번호		휴대폰번호	
	컨소시엄여부	□ 기관 개별실행 □ 컨소시엄 구성 (참여단체명 :)		
	어린이재단 파트너경험	□ 없음 □ 어린이재단 협력기관 (기관명: OO옹호센터 / 파트너 경험: 2021년 아동자립 지원 네트워크 참여) □ 기타 ( )		
사업내용	사 업 명	아동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 '그린이'		
	사업기간	2022. 00. 00. ~ 2022. 00. 00 (개월)		
	사업 참여대상	OO동에 거주하는 아동 00명과 지역주민 00명 (실인원: 00명)		
	사업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변화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조항	- 24조 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하고 아플때는 치료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세부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요약	
		마을 환경 지킴이 '그리니'	• 사업내용: 아동이 주도의 마을 환경 및 인식개선 활동 • 대상자: 그리니 참여 아동 30명 • 진행방법: 마을 자원 재활용 실태 조사, 마을 환경지도 제작, 마을 환경 지킴이 캠페인 활동	
예산	신청예산(A)	원	기관 자부담(B)	원
	총 사업비(A+B)	원	총 사업비(A+B)	원
동의사항		본 기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실현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결과를 양식에 따라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000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귀중 ***※단체 대표자 성명 작성과 직인 날인(필수)***

*** 공모사업 신청서는 양식 2장 이내로 기입**

[사업신청서 -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공모분야 / 주제: 신청하고자 하는 공모 분야 및 주제 작성 - 공고 내 확인

2. 신청기관 정보

1) 기관명 / 운영법인명 (단체명): 신청기관 / 운영법인 (단체)의 공식 명칭
2) 대표자명: 기관 / 운영법인 (단체명) 의 대표자 성함 기재,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입
2) 고유번호: 신청 기관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주소: 기관 실주소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4) 전화번호: 기관 대표 번호
5) 이메일: 기관 대표 메일주소
6) 팩스번호: 기관 대표 팩스번호
7) 담당자정보 : 작성일 기준 사업담당자의 소속팀 (직위), 현장근무경력 , 현직장 근무경력 , 직통번호 , 휴대폰번호를 기재함

3. 사업내용

1) 사업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기간: 신청하는 사업의 전체 사업 진행기간 작성
3) 사업참여대상 : 변화를 추구하는 주요 대상 및 실인원 기재 (아동과 성인 모두 포함)
4) 사업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변화: 신청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변화를 사업 목적 및 참여대상 ,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내로 작성
5) 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중 신청사업에 해당되는 조항 기입 [참고자료 1]
6) 주요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한 세부프로그램을 3개 이하로 작성하되 주요 사업내용 , 대상자 , 진행방법 등을 요약하여 작성

4. 예 산

1) 신청예산: 재단에 신청하는 사업비를 원 단위로 작성
2) 기관 자부담: 기관에서 자부담하는 사업비를 원 단위로 작성
3) 총사업비: 신청예산과 기관 자부담 예산의 총계를 원 단위로 작성

[서식2] 신청기관 현황

※ 파란색 글씨는 예시 및 항목별 설명입니다 제출시에는 삭제바랍니다.

신청기관 현황

<table>
<tr><td>기 관 명</td><td colspan="3"></td><td>설립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기관유형</td><td colspan="3"></td><td>소유현황</td><td colspan="3">□ 소유 □ 임차</td></tr>
<tr><td>온라인 채널</td><td colspan="3">- 홈페이지(www.childfund.or.kr)
- 인스타그램 (@childfundkorea_official)</td><td rowspan="3">직원현황</td><td>상 근(A)</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3"></td><td>비 상 근(B)</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3"></td><td>총 원(A+B)</td><td colspan="2">명</td></tr>
<tr><td>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td><td colspan="7"></td></tr>
<tr><td>주요사업</td><td colspan="7"></td></tr>
<tr><td>아동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노력</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최근 2년간
외부지원금
현황</td><td>연도</td><td colspan="2">사업명</td><td>사업수행기간</td><td>지원금액</td><td colspan="2">지원기관명</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천원</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천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2021년
결산</td><td rowspan="2">세입</td><td>총계</td><td>보조금수입</td><td>전입금</td><td>후원금수입</td><td>사업수입</td><td colspan="2">기타수입</td></tr>
<tr><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 colspan="2">천원</td></tr>
<tr><td rowspan="2">세출</td><td>총계</td><td>인건비</td><td>관리운영비</td><td>사업비</td><td>재산조성비</td><td colspan="2">기타지출</td></tr>
<tr><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 colspan="2">천원</td></tr>
<tr><td rowspan="4">2022년
예산</td><td rowspan="2">세입</td><td>총계</td><td>보조금수입</td><td>전입금</td><td>후원금수입</td><td>사업수입</td><td colspan="2">기타수입</td></tr>
<tr><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 colspan="2">천원</td></tr>
<tr><td rowspan="2">세출</td><td>총계</td><td>인건비</td><td>관리운영비</td><td>사업비</td><td>재산조성비</td><td colspan="2">기타지출</td></tr>
<tr><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천원</td><td colspan="2">천원</td></tr>
</table>

* 신청기관 현황은 양식 1장 이내로 기입하되 기관의 연혁,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 등 추가 자료는 별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경우, 대표 신청기관 현황 기록

[신청기관 현황 -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기관명: 신청기관 공식 명칭

2) 설립일자: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날짜, 시설(인)허가증, 시설 신고증에 기입된 날짜 기록

3) 기관유형: 신청 기관 해당 유형 기재(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4) 소유현황: 소유, 임차여부에 중 해당사항에 표시

5) 온라인채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등이 있는 경우 주소 작성

6) 직원현황: 상근직원 수(신청기관에 고용된 직원 중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인원)와 비상근 직원수(신청기관에 고용된 직원 중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 수)의 인원을 기입하고 총원을 기입

10) 주요사업: 신청 기관의 주요사업에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11) 아동보호정책준수를 위한 노력: 신청기관에서 기관 및 사업 운영, 대상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아동보호정책 준수 및 이행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작성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아동학대 발생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참고자료 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 62p' 문서 참고)

11) 최근 2년간 외부지원금 현황: 최근 기관에서 2년간 외부지원금을 받아서 수행한 사업 기재

12) 결산, 예산: 전년도, 당해연도 결산 및 예산 금액 기재, 해당사항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단위는 천 원 단위로 기재

• 세입

- 보조금수입 : 국가 및 사 도, 또는 사 군 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또는 후원금)
- 후원금수입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 포함)
- 사업수입 : 법인 수익사업,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
- 기타수입 : 기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용자부담금, 재산수입(부동산임대수입, 소유주식 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부동산매각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과년도 수입(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차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

• 세출

- 인건비 : 임· 직원에 대한 급여, 제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 관리운영비 :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의 사무비
- 사업비 : (법인) 법인시설 운영 외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시설) 이용자,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 교육비,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 기타지출 : 기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등

[서식3] 사업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예시 및 항목별 설명입니다 제출시에는 삭제바랍니다.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 작성*

공 모 분 야	기후위기대응	기 관 명	초록복지관
신청 공고명	2022년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아동 참여형 공모사업	제 출 일 자	2022. 00. 00 (목)

Ⅰ. 사업내용

사 업 명	아동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 '그린이'

[작성 가이드]
* 사업명은 프로그램이 누구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 아동권리기반 관점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슬로건은 부제로 작성합니다.
예시) 아동 의사결정참여 인식 향상을 위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 '아동위원회: 동심'

1. 사업내용 요약

- 사업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 변화를 위한 주요 활동과 계획, 주요 참여자 등을 요약하여 작성

2. 사업의 필요성

-

[작성 가이드]
*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작성합니다.
* 아동권리기반에 따라 아동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아동을 위해 누구와 함께 어떤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지 아래 질문을 참고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및 지표 활용, 이론적인 배경 나열 지양)
- 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나요?
- 우리 지역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나요?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 현 상태로 인하여 아동이 어떤 권리를 침해받거나 차별받고 있나요?
-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나요?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서 시도한 이전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3. 사업의 대상

1) 사업 지역

-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 지역 자원, 지역주민 욕구, 아동의 목소리 등을 요약하여 기입

2) 사업 대상

프로그램 대상	실인원수	선정기준	참고
- 초록복지관이 위치한 OO시 초록1~3동에 거주하는 아동중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	30명	- 활동 전 아동선발 인터뷰를 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아동을 선발	
	명		

[작성 가이드]
* 누구의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대상 및 인원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프로그램 대상은 참여아동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인원수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아동 수입니다.
* 프로그램 특성상 성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EX.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인원수에는 아동과 성인을 합해서 적고 참고란에 아동과 성인이 각 몇 명인지 작성합니다.

4. 사업 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

[작성 가이드]
* 목적은 공적 선언이며,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 특정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기술합니다.
* 사회문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상 집단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여자의 바람직한 변화와 어떤 방법으로 그 변화에 이를 것인가를 서술합니다.
*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여 목적을 작성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아동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한 활동인가요?
  - 우리의 활동이 아동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2) 목표 및 평가

① 산출목표

세부 프로그램	산출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측정도구 및 방법
아동권리교육	• 그리니 참여 아동 20명이 아동권리교육에 3회 참여 • 그리니 참여 아동 20명과 「우리 마을 변화 만들기」 제안서 작성 1회 실시	• 실시 횟수	• 결과보고서 • 참여아동 명단 • 의견제안서

② 성과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측정도구 및 방법	측정시기
프로그램 참여아동의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감수성 향상을 나타낸 아동 비율	인권감수성 척도지, 프로그램 참여 아동 사전, 사후 설문조사, 참여소감 인터뷰	프로그램 시작, 종료시

[작성 가이드]
*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에서 비롯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의 형태로 서술합니다.
* 목표는 아동 중심으로 작성하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사회문제에 대한 아동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별로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작성하되 이 프로그램에서 개입하는 대상과 관련된 목표만 작성합니다 (권리주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의무이행자 관련 목표 생략가능)
* 필요에 따라 셀은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산출목표란?
- 어떤 서비스가 진행(어떤 서비스를, 몇 명에게, 얼마나 제공) 되었는지에 대한 목표
- 서비스 활동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산출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참여자 수, 프로그램 제공 수 등 How many를 측정한 것
- 예시)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제공 횟수, 참여자 수 등

* 성과목표란?
- 참여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인식, 지식, 감정, 행동, 태도 등)에 대한 목표
- 프로그램의 효과성 즉, 참여자의 인식, 지식, 행동의 적접적인 변화를 통해 야기된 효과를 나타낸 것
- 인적, 물적인 노력과 시간을 조직·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서비스 대상의 변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예시) 경제적 편익, 태도와 가치의 변화, 행동변화, 조건개선, 인식개선 등
- 대상자 변화 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며 변화의 방향, 측정가능한 클라이언트 또는 변화상태, 기한, 어떤 비용과 노력으로 할 것인지 포함합니다.

5. 사업 수행 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세부 프로그램명	활동내용(수행방법)	시행시기	시행횟수	대상 및 참여인원
		0월~0월	회	아동 00명, 지역주민 00명

2) 수행 인원 및 역할

이름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 : 1주)	주요업무	자격사항
이○○	○○○팀/과장	30시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1급

3) 사업진행 일정

주요내용 \ 해당월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우리마을 환경 지킴이 '그린이'	아동 권리교육												
	기후환경교육				4회차 진행								
	활동 정기모임												
	마을 주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회의		온라인 캠페인						
	우리 마을 환경 지도 제작									지도 배포			

6. 연대협력(파트너십) 계획

기관명	연대활동 및 협력 계획	참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OO아동옹호센터	- '환경 지킴이 네트워크' 활동 위원 위촉을 통해 지역사회 옹호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 재단 기후환경교육 진행 협조	
OO시 에코 센터	- 환경지도 제작 관련 지역 자원 재활용 전문가 자문 - 자원재활용 체험교육 진행 - 마을 주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홍보 협력	

[작성 가이드]
* 컨소시엄(공동수행)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참고란에 '컨소시엄 단체'라고 작성합니다.
*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과 연대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각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연대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할 것인지 실제적인 연대협력 계획을 작성합니다.

8. 사업 예산계획

[작성 가이드]
* 비율은 신청금액(100%)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인건비+관리운영비'가 30%, 사업비가 70%입니다. 각각의 합계 및 비율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 세목별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습니다.

1) 예산 편성 총액

(단위: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합계
신 청 예 산			
원	원	원	원
%	%	%	100%
자부담 예산			
원	원	원	원
%	%	%	100%
사업비 총액	관리운영비 총액	인건비 총액	합 계
원	원	원	원

2) 세부 예산 계획

(단위:원)

목	세 목 (프로그램명)	계	산 출 근 거	신청예산	자 부 담
사업비	우리마을 환경 지킴이 '그린이'	750,000	정기모임 간식비 3,000원×30명×8회 =720,000원	720,000	
			현수막 제작비 30,000원×1회 = 30,000원	30,000	
	소 계				
관리운영비					
	소 계				
인건비					
총 계					

9.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 및 사업의 지향점

-

[작성 가이드]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와 기대를 아동, 부모, 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점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아동권리기반 관점으로 작성합니다.

10. 아동보호정책 이행 계획

1) 아동폭력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경감계획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아동정보만 수집하며 아동 사진 촬영시 아동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동의서를 발송하여 취합할 예정임.

- 모든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아동권리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함

-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아동보호정책을 고지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서약서에 서명하여 보관함

- 관련 인력 채용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기 적합한 인력을 채용함

2) 아동폭력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절차

- 종사자 전원은 신고의무자이므로 아동폭력 상황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며 절차에 따라 보고함. 이 과정에서 관련 조사에 비밀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

[작성 가이드]
- [참고자료4 -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내 'Ⅲ. 예방과 실행', 'Ⅳ 모니터링 및 보고' 참고
- 위의 내용은 예시이므로 기관에서 기관 운영 및 신청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제 예측되는 다양한 아동폭력의 위험 요인들을 점검해보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작성함
- 아동폭력상황 발생시 기관의 보고, 대응, 사후피해예방을 위한 절차를 요약하여 작성

※ 참고문헌

1) 김초록, 이우산. (2022). 아동권리의 이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8~20p.

[참 고]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계획 점검

아래 문항을 통해 사업계획 과정에서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수행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점검

원 칙	참 고 문 항
아동중심	-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가? - 아동들에게 권리주체자임을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책무성	-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 원인까지 감안하는가? -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였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는가? - 의무이행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비차별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차별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였고, 차별요소 없이 아동을 선정하였나? - 아동들의 이용 및 접근성을 감안하였는가? - 아동의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아동최상의 이익	-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진행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아동발달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었는가?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에 맞는 활동과 자원이 연계되었는가?
참여	- 아동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 - 아동들이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반영한 내용을 아동에게 공유하였는가?
아동친화적 환경	-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가? - 개선된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파트너십	-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기관과의 연대를 감안하는가? - 프로그램 진행 시 연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서식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진행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사업 신청 시 수집, 이용 · 담당자 성명, 소속팀(직위), 연락처,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모사업 신청 단계 · 공모사업 접수, 심사, 결정, 신청 이력확인	사업 종료 후 5년
■ 공모사업 선정 후 수집, 이용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사업 관련 직원 채용, 강사, 자문 교수 등의 자격증, 학력, 근무경력, 사진 등	■ 공모사업 선정 후 단계 · 사업비 집행, 평가 등의 전반적인 업무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사용제한으로 심사, 선정, 평가, 업무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수행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 자문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및 기관	■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자문 또는 연구 목적의 개인 및 기관의 업무협조	■ 공모사업 신청 단계 · 담당자 성명, 소속팀(직위), 연락처, 이메일,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사업 종료 후 5년
		■ 공모사업 선정 후 단계 · 담당자 성명, 소속팀(직위), 연락처, 이메일,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사업 관련 직원 · 강사 · 자문교수 등의 자격증, 학력, 근무경력, 사진 등	

※ 위의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업무지연 및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기년도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사진 활용에 대한 동의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시 필요)

활용 항목	활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사업 선정 시 기관 종사자의 재단 행사 참석 사진 ■ 선정 사업 진행과정 중 기관 종사자 외 기타 인력 및 참여자가 나온 사진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 평가 시 책자 및 기타 제작물 인쇄, 영상 제작 ■ 보도자료, 재단소식지, 사업소개자료 등에 사업홍보	사업 종료 후 5년

※ 위의 사진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 및 외부 신뢰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심사,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활용에 대한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재단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모사업의 신청인은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 재단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집 · 이용,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 3자 제공에 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_____ **담당자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귀중

[서식5]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아동보호정책 준수 서약서

아래 기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동참하는 기관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과 행동강령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는 공모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정책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기관명		**담당자명**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귀하

Ⅵ

참고자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참고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21조 | 입양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조 | 난민 아동 보호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난민이 되었을 때, 국가는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은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3조 | 장애 아동 보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4조 | 건강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 시설 아동 조사
아동이 부모님과 헤어져 양육시설에서 지낼 경우, 국가는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 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 기본적인 생활 수준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8조 |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9조 |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 소수 아동 보호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동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아동은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아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4조 | 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5조 |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38조 | 전쟁으로부터 보호
전쟁지역에서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 상처 입은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 고문, 전쟁 등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국가는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0조 |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이라도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2]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3)]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가. 전문(Preamble)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며,

유엔 체제하의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고, 충분한 자유 안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하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위 선언 및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하며,

유엔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웰빙(well-being)[4)]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 받아야 함을 고려하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그리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명심하고,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전후 모두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하며,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3)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문본은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재번역 하였습니다('18.8-12. 제작)

4) 웰빙(well-being)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본 소책자에서 웰빙은 고유명사의 의미로 웰빙(well-being)으로 표기하며, 문맥에 따라 '행복', '안녕', '복지'의 의미로 해석한다.

있으며, 이 아동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실질적 규정)

1) 제 1 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은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제 2 조 (비차별)

①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5]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 3 조 (아동 최상의 이익)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및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정한 직원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안전, 보건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4) 제 4 조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협약 원문의 "legal guardian"은 "법정후견인"으로 번역되나, 본 포켓북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의 법률행위 능력을 대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 재산관리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법정대리인"으로 번역하였다. 협약은 부모 외에 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 제 5 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또는,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6]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6) 제 6 조 (생명·생존·발달)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7) 제 7 조 (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8) 제 8 조 (신분의 보존)

① 당사국은 불법적 간섭없이 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비롯해 아동이 신분을 보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아동이 자신의 신원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9) 제 9 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 아동이 부모 중 한 명, 부모 모두 또는 아동 자신의 구금, 투옥, 망명, 강제 추방,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당사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아동의 웰빙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때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

6)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과 자율성 증진과 관련한 개념이다. 이는 아동이 눈으로 보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가진 기본적이면서 발전 가능한 가능성을 설명한다.

국은 이러한 정보제공이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0) 제 10 조 (가족과의 재결합)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가족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 또는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안이 신청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협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어떤 국가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 제 11 조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금지)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12) 제 12 조 (아동의 견해 존중)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제 13 조 (표현의 자유)

①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탐색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2.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14) 제 14 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방

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15) 제 15 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 없다.

16) 제 16 조 (사생활 보호)

①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제 17 조 (정보 접근)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웰빙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1.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류 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4.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선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적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여 아동의 웰빙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8) 제 18 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돌봄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

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제 19 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0) 제 20 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Kafalah)[7],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 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1) 제 21 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국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국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알선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제 22 조 (난민 아동)

① 당사국은 아동이 난민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여

7) 카팔라(Kafalah)란, 아랍어로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회교도국가들의 수양자제도를 의미하며 가족질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에 의해 보충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닌 수양부모와 수양자의 관계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양한 아동보호 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제아동인권센터(2017) 일반논평12호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참고)

겨지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협약 및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권한 있는 정부간 기구[8] 또는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지원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적절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3) 제 23 조 (장애 아동)

①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건에서, 충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아동과 그들의 양육자에게 아동의 여건과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장애 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한 개인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이 교육 훈련, 의료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여가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접근할 수 하는 것을 비롯해 예방의학 및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 분야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24) 제 24 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①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치

2. 일차보건의료의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3. 일차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8)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란,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단지 국제기구라고도 하며 국가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 목적을 국가간의 기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적 측면의 목표가 있다. 국제연합(UN) 또한 대표적인 정부간 기구이며, 그 외 국제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이 있다.

4.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5.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이 아동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교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6.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및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③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25) 제 25 조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배치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6) 제 26 조 (사회보장제도)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양육책임자의 재원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신하여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27) 제 27 조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해 재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28) 제 28 조 (교육)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도입 및 필요 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29) 제 29 조 (교육의 목적)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3. 아동의 부모와 아동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② 교육기관의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청 하에,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0) 제 30 조 (선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고유문화 향유)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선주민 아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1) 제 31 조 (휴식·놀이 및 여가)

① 당사국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32) 제 32 조 (아동 노동)

①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기타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1.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2.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3. 본 조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규정

33) 제 33 조 (약물 남용)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제 34 조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관여하도록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나 기타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

3. 음란한 공연 및 그 소재로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9)]

35) 제 35 조 (아동 유괴·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로든 아동탈취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 제 36 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영역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37) 제 37 조 (범죄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치)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어떤 아동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9) 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어떤 아동도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구속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그들 나이의 욕구를 고려한 방법으로 처우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서신과 면회를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의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 제 38 조 (무력충돌에서의 아동 보호)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충돌[10]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연장자부터 징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무력충돌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 제 39 조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방임,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충돌로 인한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는 아동의 존엄성, 자기 존중 및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0) 제 40 조 (소년사법)

①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발전적인 역할의 바람직성을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국제규범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10)구체적인 해석·실시에 관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받는다.

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나.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 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지체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하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위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 통역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2.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온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④ 아동의 웰빙에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돌봄,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위탁양육, 교육 및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안적 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41) 제 41 조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규정)

협약은 아동권리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당사국의 법

2.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나. 제2부(이행과 모니터링)

1) 제 42 조 (협약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2) 제 43 조 (아동권리위원회)

① 본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본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 받은 18명의 전문가[11]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12]되며,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들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된다. 매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후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당사국이 이를 지명했는지 작성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시한다.

⑤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며,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임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⑦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⑨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사무관을 선출한다.

⑩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

11) 위원회는 초기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 11월 이후 18명의 전문가로증원하여 구성되고 있다(협약 원문 내 각주 참고)).

12) 위원은 개인의 능력으로 활동하며, 국가에 의해 선발되었지만 그들은 국가 및 특정 기관을 대변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하였으며, 2007-2011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⑪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⑫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3) 제 44 조 (국가의 아동권리 이행 보고 의무)

①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행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1.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2. 그 후 5년마다

②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본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첫 통합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따라 제출할 후속보고서에 이미 포함된 기초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⑥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제 45 조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및 기타 유엔기관들은 본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게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유엔기관들에게 그들의 활동 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에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요청이나 명시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관련있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권한있는 기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13]

13) 200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이나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범세계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4. 위원회는 본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해당 논평과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된다.

다. 제3부(협약과 관련한 기타 정보: 부칙)

1) 제 46 조 (서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2) 제 47 조 (비준)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제 48 조 (가입)

본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제 49 조 (발효)

① 본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②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본 협약은 해당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5) 제 50 조 (개정)

①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본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6) 제 51 조 (유보조항)

① 유엔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 당사국이 유보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한다.

있음을 발견'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유엔총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조사(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7/90 of 2002)하도록 하였고,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 에 관한 심층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 되었다. (국문번역본은: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본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유보조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7) 제 52 조 (탈퇴)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8) 제 53 조 (수탁자)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9) 제 54 조 (기탁)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임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했다.

※ 자 료 출 처: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

[참고자료 3] 아동권리기반 적용 세부 기준 점검 - 프로그램 부문

작성방법 1)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대해 각 항목별 주요개념 및 참고문항을 참고하여 아동권리기반을 적용한다.
2) 프로그램 진행 전반의 아동권리기반에 대한 적용예시를 각 항목별 요약작성한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3) 아동권리기반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적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극복에 대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원 칙	주요개념 적용예시	참고문항 적용이 어려운 점 및 제안사항
1. 아동 중심	아동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조 “권리주체자”	1-1.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가? 1-2. 아동이 권리주체자임을 알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1-3. 아동중심의 서비스 과정에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2. 책무성	즉각적 문제해결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강조 “의무이행자”의 아동권리의 촉진, 보호, 실현을 위한 책무성 강조	2-1.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적/즉각적 원인뿐 아니라 근본적/구조적 원인까지 감안하는가? 2-2.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였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는가? 2-3. 의무이행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3. 비차별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성별, 계층, 인종, 장애에 따른 차별을 경계	3-1. 아동의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3-2.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차별적 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4. 아동 최상의 이익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동 중심에 두고 결정	4-1. 사례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4-2. 진행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5. 아동발달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모든 잠재력이 발달되도록 하는데 전념	5-1. 아동의 연령별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중요하게 다루는가? 5-2.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및 자원이 연계되고 있는가?
6. 참여	아동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을 증진하고 아동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	6-1.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는가? 6-2. 아동이 표현한 의견을 보호, 반영하는가? 6-3.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반영한 내용을 아동에게 공유하였는가?
7. 아동 친화적 환경	아동의 이해를 높이는 장치와 안전한 환경 마련을 통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7-1.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가? 7-2.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인가? 7-3. 개선된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8. 파트너십	아동의 권리를 촉진, 보호, 실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과 연합체 구축	8-1.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친 기관과의 연대를 감안하는가? 8-2. 연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참고자료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보호정책

아동보호정책

– Child Safeguarding Policy –

Ⅰ. 아동보호정책의 이해와 원칙

1. 정책의 목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재단')의 미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 가도록 돕는 것이다. 재단은 미션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 가족,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재단을 포함한 11개국의 아동 중심 NGO들의 연합체인 국제어린이재단 연맹(이하, '연맹')은 2016년 11월 'Keeping Children Safe'에 가입하고 '아동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연맹 회원국이 이를 준수하고 정책을 도입할 것을 장려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본 아동보호정책(이하, '정책')의 목적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재단은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한다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2. 정책 이행의 원칙

본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하며, 다음의 원칙을 갖는다.

1) 아동권리 존중

재단은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임할 때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다. 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핵심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 의견 표명과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열린 논의의 장

재단은 본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및 정책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제기 및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시기적절성

아동에 대한 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은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하면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이에 대응한다.

4) 비밀 보장

재단이 본 정책이 위반된 경우를 조사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어야 하며, 관련 기록과 진행사항을 반드시 비밀로 해야한다.

5) 파트너십

재단은 관련자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때 관련자가 정책을 인지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3. 용어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본 정책의 목적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정한 바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 '관련자'라 함은 아래 4. (정책 대상)에 명시된 자 이외에도 재단과 관계를 맺고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

- '아동폭력'이라함은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거나, 체벌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신체(적)폭력'이라함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

- '정서(적)폭력'이라함은 아동과 상대방의 힘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아동의 정서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아동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아동을 모욕, 차별, 조롱하거나, 아동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아동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방임'이라함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 '성폭력'이라 함은 모든 국가, 민족, 또는 지역별 법규 또는 일상 관례와 상관없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근친상간
- 조혼
- 강간
- 성적인 농담
-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아동의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인이 아동을 만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과 가상 성관계를 하게 하는 행위
- 아동과의 성관계, 아동의 성 착취, 아동과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착취'라함은 누군가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이용하는모든행위를뜻하며, 아동의 노동 및 성을 착취하거나, 이를 위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매매하거나 납치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을 군대에 징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협력기관'이라함은 아동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재단과 함께 일하는 기관 및 사람을 일컫는다.

■ '아동보호(Child Safeguarding)'는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및 이의 이행이다.

4. 정책 대상

본 정책의 대상자는 재단 이사, 임직원, 관련자로 분류된다. 본 정책은 재단에 소속된 국내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동보호정책 대상	
• 이사회 및 임직원	
*재단 이사 및 임직원을 제외한 아래의 대상자는 **'관련자'**라 함.	
• 인턴(근로장학생 등) 및 실습생	• 후원자(개인, 기업, 단체 등)
• 사회복무요원	• 자문단 및 자문 위원
• 자원봉사자	• 재단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협력기관 및 소속직원	• 언론인 및 미디어 관련자
• 홍보대사(나눔대사 등) 및 후원회	• 기타 관련자

본 정책은 반드시 국내외 모든 직원과 파트너가 이해하고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재단의 해외사업이 시행되는 현지 국가의 법, 전통, 관습이 본 정책과 다를 경우, 본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역할과 책임

재단은 국내외 모든 직원과 관련자들이 본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정책 대상은

- 위반 사항에 대한 재단의 보고 및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재단 또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안전을 염두에 두어 정책 위반 사항에 대응하고,
- 위반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비밀로 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6.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본 정책은 재단의 모든 규정 및 지침에 우선하며, 재단의 모든 규정 및 지침은 본 정책을 따른다.

Ⅱ. 예방과 실행

1. 채용

재단은 본 정책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아동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한다.

1) 재단은 직원 채용시 합격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아동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재단은 채용된 자로 하여금 본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다.

2. 교육 및 훈련

재단은 본 정책의 모든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본 정책과 재단의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1) 임직원에게 직무 및 직책별 교육 등을 통해 다음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아동보호의 개념 및 국제기준
   - 본 정책과 행동강령의 내용
   - 본 정책의 실천 및 적용 방법

2) 신임직원에게 신임직원교육을 통해 다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동보호정책 준수서약서에 서약하도록 해야한다.
   - 아동보호의 개념 및 국제기준
   - 본 정책과 행동강령의 내용 (및 이를 준수한다는 서약)

3) 재단의 관련자에게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대면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다음에 대해 교육을 받고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서약서에 서약하도록 해야 한다.
   - 본 정책과 행동강령의 내용 (및 이를 준수한다는 서약)

3. 복지사업(국내/해외)

재단은 국내 및 해외 복지사업의 기획,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본 정책을 준수한다.

1) 사업기획
   - 재단의 복지사업은 증거에 기반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든 사업은 사업의 중점 또는 대상과 관계없이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 사업 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이 아동과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당 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특히 학대나 착취 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한 사업에는 즉각적 개입 및 근본원인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수행
   - 재단은 사업수행의 과정과 그 결과가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 재단은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자에게 본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반드시 사전 고지한다.
   - 사업 담당임직원은 아동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관련자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아동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반드시 모니터링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재단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 반드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본 정책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정책위반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4. 아동정보보호

1) 아동정보보호

모든 정책 대상은 취득한 아동정보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아동의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모든 정책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아동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 모든 정책대상은 해당 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즉시 재단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의 정보를 파기한다.
- 모든 정책대상이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모든 정책대상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달할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만 개별 발송하고, 해당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관련자가 아동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직원은 관련자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을 반드시 고지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한다.
- 모든 정책대상은 후원자에게 결연 아동의 기본정보(이름, 거주지역, 연령, 가족 구성 등)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 재단은 후원자가 제공받은 아동의 기본정보가 해당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임의로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음을 후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재단은 (아동의 가족, 아동의 거주지역 등) 후원자가 개별적 만남, 서신교류 등으로 획득한 정보 또는 사진을 무분별하게 배포할 수 없음을 후원자에게 알려야한다.

5. 아동과의 교류활동

모든 정책 대상은 아동과의 교류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교류활동은 대면(방문), 서신, 온라인 등의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아동 교류 전 준수사항

- 관련자가 아동 대면 교류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임직원은 관련자에게 재단의 아동보호 정책을 반드시 고지하고 관련자로 하여금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자가 해외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방문할 국가의 정치 또는 문화적 상황 및 사업지역의 위험수위를 고려하여 이를 승인 또는 거절해야 한다.
-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아동과 교류할 수 없다.
- 임직원은 아동에게 교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사전 고지한다.

2) 아동과의 교류 시 준수사항

- 관련자는 아동과 단 둘이 만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아동과의 대면은 재단 직원의 동행 하에 재단이 지정한 장소(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 대상은 아동과 대면하는 경우, 종교, 인종, 문화, 나이, 성별, 장애, 정치 등의 이유로 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이들과 부적절하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아동을 체벌하지 않는다.
- 아동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임직원 및 관련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초청, 재방문, 선물, 금전적 지원 약속 등 아동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관련자는 아동 및 아동 가족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계정 등) 상호 연락처를 교환할 수 없다. 활동 특성상 아동의 연락처를 취했더라도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연락처를 폐기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아동이나 아동 가족으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재단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전달받은 연락처를 공유해야 한다.
- 관련자가 만나는 아동에게 별도의 추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재단 직원과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관련자는 일체의 현금을 아동에게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물품도 재단 직원과 상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 관련자는 아동을 대면하는 동안 아동에게 학대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6.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1) 아동의 존엄성

-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는 아동과 연관된 취재·보도·홍보·모금 등의 제반 활동을 포함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사전 동의

- 임직원은 미디어 관련자에게 본 정책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취재 및 촬영 전에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서약서'를 받는다.
- 임직원은 미디어 관련자가 아동을 취재 및 촬영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련자로 하여금 대상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아래 사항이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촬영 결과물의 사용 목적 및 방법
  - 아동 개인정보의 미디어 노출 범위
- 사전 동의는 아동 및 보호자가 미디어 관련자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간섭이나 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미디어 관련자는 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게 자신의 신분 및 촬영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
- 어느 누구도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촬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아동의 실명, 학교, 주소 등 구체적 개인정보는 미디어 노출범위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3) 안전한 환경

- 미디어는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촬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4) 사후 피해 예방

- 재단은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해야 한다.

5) 사실 기반

- 어느 누구도 아동의 정보와 촬영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6) 외부기관

-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활동을 위해 외부기관과 계약하는경우, 관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취해질 법적 조치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부득이 서면계약 없이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위의 모든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Ⅲ. 모니터링 및 보고

1. 보고 및 대응

1) 보고

재단 임직원은 본 정책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아동보호정책 위반 의심사례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 아동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는 발견 즉시 신고보고서 제출을 통한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즉각적인 서면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정책 위반 의심사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와 함께 본 정책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정책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보고 원칙과 절차는 임직원과 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정책 대상에게 동일하다.

2) 조사 및 대응

① 조사

재단 아동보호위원회는 본 정책을 위반한 사항이 보고된 경우, 다음의 원칙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

> 보고된 모든 사항과 관련한 정보는 비밀 유지의 원칙에 따르며, 최소한의 관련자에게만 공개한다.
> 보고된 대상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 조사는 적절한 시간 내에 공정하고 공평하며 객관적으로 진행한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력한다.

보고된 의심사례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된 경우 관련 기관에 의한 법적 조사와 병행해, 정책 위반사항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

② 대응

재단 아동보호위원회는 보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가능한 3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 보고된 위반사항이 재단 임직원의 관련 법 위반일 경우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재단 인사위원회에 인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고된 위반사항이 재단 임직원 또는 관련자에 의한 본 정책 위반일 경우, 아동보호위원회는 개인 및 기관, 정책 및 제도의 측면에서 아동보호정책 준수 및 이행을 위한 개선의 조치를 취한다.

2. 기밀유지 및 사후 피해 예방

임직원은 보고 및 대응의 전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기밀로 유지한다. 재단은 본 정책과 관련된 보고 및 대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증인의 신상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3. 정책 이행여부 점검

1) 정기 내부감사

감사실은 재단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본 정책의 준수여부와 관련된 감사의 결과는 주관부서와 공유한다.

2) 수시 모니터링

본부 각 부서는 소속 직원을 위한 내재화 계획을 수립하며, 국내외 사업기관이 정책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는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3) 정책 이행 점검 및 정책 개정

주관부서는 각 부서가 타 부서 또는 국내외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본 정책의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 정책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유관 규정 및 업무 지침 등에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참고자료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사업기관 리스트

기 관 명	우편번호 및 주소	전 화 번 호
본 부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02) 775-9122
서울1지역본부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0층	(02) 325-2257
서울2지역본부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0층	(02) 752-2792
서울3지역본부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0층	(02) 3453-6720
부산지역본부	47296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3층	(051) 505-3117
대구지역본부	41812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911 천일빌딩 5층	(053) 756-9799
인천지역본부	21390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032) 875-7010
광주지역본부	61968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동우아스트로오피스텔 4층 401호	(062) 351-3513
대전지역본부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31 대신빌딩 702호	(042) 477-4072
울산지역본부	44709 울산시 남구 화합로 224번길 4, 2층	(052) 275-3456
경기지역본부	1669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빌딩 7층	(031) 234-2352
경기북부지역본부	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광성빌딩(프라자) 506호	(031) 965-8101
강원지역본부	26452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2, 신영빌딩 5층	(033) 762-9171
충북지역본부	287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 프뢰벨빌딩 3층	(043) 256-4493
충남지역본부	31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희망빌딩 4층	(041) 578-7173
전북지역본부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2층	(063) 276-2800
전남지역본부	58254 전남 나주시 남산길 45-12, 2층	(061) 332-8993~4
경북지역본부	37763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 4층	(054) 273-7333
경남지역본부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한마음타워 6층	(055) 237-9397~8
제주지역본부	63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0, 2층	(064) 753-3703
세종지역본부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I 4층 406호	(044) 865-5527
서울아동옹호센터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0층	(02) 3789-1279
부산아동옹호센터	47296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3층	(051) 507-3995
경기아동옹호센터	15051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67-8	(031) 365-4388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11639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64, 2층	(031) 872-8674
전남아동옹호센터	58254 전남 나주시 남산길 45-12, 1층	(061) 332-8991
경북아동옹호센터	39272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64 새로넷빌딩 3층	(054) 458-9779
경남아동옹호센터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한마음타워 6층	(055) 237-9398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15051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67-8	(031) 362-5661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0742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13길 4	(02) 845-533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48711 부산시 동구 수정공원로 15	(051) 465-0990
대구종합사회복지관	41113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26길 67	(053) 964-3335
대전종합사회복지관	34414 대전시 대덕구 우암동로15번길 20	(042) 627-2957
청주사회복지관	2874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3-1	(043) 253-4493
전북종합사회복지관	55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0	(063) 282-7230
제주종합사회복지관	63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21, 2층	(064) 753-2740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3층	(02) 325-9080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21390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032) 866-1226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61968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동우아스트로오피스텔 3층 301호	(062) 351-1206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1669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서린프라자빌딩 7층	(031) 234-3980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31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10길 8 희망빌딩 4층	(041) 577-1226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한마음타워 5층	(055) 237-1226, 1228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41906 대구시 중구 태평로 302	(053) 422-1391~2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61966 광주시 서구 내방로 216	(062) 385-1391~3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24257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2층	(033) 244-1391~2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5515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반트휘트니스클럽빌딩 2층	(033) 644-1391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57935 전남 순천시 삼산로 92-5	(061) 753-5125~8
한사랑마을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4	(031) 764-2115
한사랑학교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2	(031) 762-4891
한사랑장애영아원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4	(031) 764-1119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가이드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발 행 2022년 1월
발행인 이 제 훈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디자인 ㈜ 디자인지